

고형연료제품 (☐ 수입 / ☐ 제조) 변경신고서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7일
------	-----	------	----

신고인	상호	사업자등록번호
	성명(대표자)	생년월일
	사업장 소재지 (전화번호:)	

신고번호

변경 내용	변경 전
	변경 후

변경 사유

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의4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
위와 같이 고형연료제품 수입·제조 신고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고형연료제품의 수입·제조 신고확인증 원본 2.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.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결과서 사본[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이 있는 경 우(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4호의 경우 변경신고일 이전 분기에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의5제3항에 따른 확인을 한 경우는 제외합니다)만 해당하며, 변경신 고서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합니다]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처 리 절 차

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